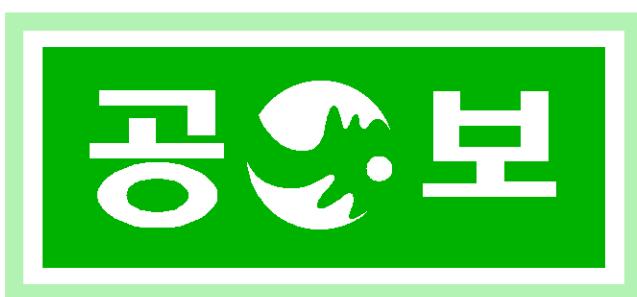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675 호 2011. 1. 3(월)

조례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7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76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77호[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0

공고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0-920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0-92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2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충호



2011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울산
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을 “「공무
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이라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비
규정”을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제목 “(여비규정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
비규정”을 각각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등 규정”을 “같은 규
정”으로 한다.

별표 중 제2호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별표)
 - 별표 중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나.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제1조, 제4조 등)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호



2011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을 “구민의”로,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으로, “연암동 1004-1번지”를 “산업로 10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을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으로 한다.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설치 · 운영

제5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3항 “(강사의 위촉)”을 “(강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강좌는 경기 강좌와 수시 강좌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경기 강좌는 12 주 과정을 1기로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4조 각 호 의의 부분 중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용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0조를 제21조로, 제19조를 제20조로, 제18조를 제19조로, 제17조를 제18 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강좌 운영에 기여한 수강생, 강사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 냉예를 높인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등

제16조의 제목 “(사용자의 설비등)”을 “(사용자의 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아야 하며,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정수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정기 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총액
	2회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4회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6회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 해당액
	6회차 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시 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총액
	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수강료의 반환법위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강생에게 편리 도모
- 나.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활성화 등 명문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1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친환경급식과 부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 내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②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 ④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친환경·생태친화적 생산· 육성·가공 과

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 「축산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증진치과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5. 지역 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 · 변형된 농 · 축 ·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 · 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⑤ “부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⑥ “친환경 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 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가공, 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⑦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 · 생태친화 급식기준 마련 및 물품 등록과 식자재 수급계획 수립,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 교육 · 체험 · 건강평가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⑧ “친환경표준식단”이란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음식을 활용하는 식단으로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의 신순환구조를 가진 식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임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생태친화적 농축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 농축수산물 수급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및 개선과 지원 및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제2호에 따른 협약체결 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지역 농축 수산물 수급계획에 따른 해당 농가나 생산단체등과의 원활한 생산·공급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생산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제6호에 따라 생산자·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제 매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순으로 사용한다.
 4.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순으로 사용한다.
-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질정,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과 생산자·생산자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제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등 급식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자·생산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및 관련국장·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6.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울산광역시 북구 생산자단체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 관련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부상급식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

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내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

회 수당 및 예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

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 · 생산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

목선정

3.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발주
4. 표준식단“안”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안” 마련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종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제작 등 관리요원
 - ⑥ 급식지원센터는 제3조제1항제2호·제6호에 따라 지역 친환경농업육성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 ⑦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제3조~제8조)
 - 구청장의 임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대상자의 의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조~제13조)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4조~제15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학교와 구매협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급식경비 지원 내역,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
 - 감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 92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09. 4. 1)됨에 따라 일부 조문 변경 및 삭제
-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지급(안 제5조의 2신설)
-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조 신설)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시군구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 시행령 및 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내용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담당(전화 052-219-7283, 팩스 052-219-72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0-9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 등 인적 자원 확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의(위원의 임기) 내용 중 “1차에 한하여” 문구 삭제

3. 근거법규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생활지원과)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9-7322, FAX 219-733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